제362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3호

국회사무처

2018년7월26일(목) 오후 4시 30분

의사일정

- 1. 교육위원장 선거
-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 5.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 6.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 7.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4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6.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7.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9.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교육위원장 선거4
2.	교육위원장 선거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의장 제의)4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의장 제의)4
5.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
6.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4
7.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О	상임위원장(교육 이찬열·문화체육관광 안민석) 인사 ·······7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최운열·송기헌·유동수·전재수·
	윤관석·제윤경·추미애·손금주·설훈·김정우·이해찬·김민기·남인순 의원 발의)8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
	김정우・남인순・박찬대・설훈・송기헌・유동수・윤관석・이해찬・전재수・제윤경・최운열・
	추미애 의원 발의)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강훈식·정춘숙·
	기동민・이인영・안규백・이찬열・윤관석・문희상・김정우・김해영・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9
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석기·경대수·
	문진국・송기석・박성중・추혜선・박인숙・이종구・박재호 의원 발의)9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종회·정춘숙·
	기동민・안호영・김철민・윤후덕・임종성・최인호・민홍철 의원 발의)9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이춘석・박찬대・금태섭・고용진・위성곤・박지원
	의원 발의)9
l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삼화·신창현·윤관석·김정우·
	김중로·정동영·손금주·김영호·금태섭 의원 발의) ·······9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 박재호·안호영·고용진·민홍철·어기구·권칠승·조정식·기동민·정재호·이원욱·최인호
	의원 발의)9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9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9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명수·
	김태흠·김선동·박덕흠·김용태·이은권·추경호·박성중·원유철 의원 발의)11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김석기·
	홍문표·박성중·박덕흠·경대수·박맹우·정인화·이종명 의원 발의) ···················11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박재호·이찬열·정성호·
	전현희·조배숙·윤관석·서형수·김두관·홍의락 의원 발의)11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박명재·강석호·김현아·김명연·성일종·김석기·이채익·박덕흠·이종배 의원 발의) ·····11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전현희·민홍철·이원욱·조승래·강훈식·안호영·
	손혜원·진선미·제윤경 의원 발의) ·······11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황희・주승용・황주홍・이개호・노웅래・
	윤영일·최인호·박준영·이훈·강훈식·이종걸·윤후덕 의원 발의)11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11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12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14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장석춘·
	김종대・김석기・황주홍・성일종・신상진・주광덕・김현아・임이자 의원 발의)14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김성원·정유섭·조훈현·성일종·
	문진국·송석준·정태옥·김종석·이완영 의원 발의) ···································
3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영진·유동수·전현희·원혜영·
	윤관석·남인순·김정우·박완수·심기준·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14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임이자 · 이진복 · 박성중 · 장석춘 ·
	김현아·강길부·권성동·안규백·문진국 의원 발의)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15
3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갑윤·김정재·박맹우·김경진·
	김종석·강석호·박성중·김용태·성일종 의원 발의) ···································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호영·이원욱·
	안규백・임종성・기동민・서영교・윤관석・윤후덕・설훈 의원 발의)15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덕흠·임이자·정태옥·박맹우·
	김성원ㆍ이진복ㆍ김도읍ㆍ강석호ㆍ서청원ㆍ정갑윤ㆍ이학재ㆍ유재중 의원 발의)15
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김용태·정양석·이종배·김재경·김종석·문진국·김선동·이종명·정유섭·강석진·박찬우·
	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
3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우원식・변재일・박정・이개호・
	심재권·박재호·정유섭·유동수·유승희 의원 발의)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0.5	제출) ····································
30	중소기업 이런지워 특별번 익부개정법률아(무미옥 의원 대표박의)(무미옥 · 고용지 · 유종오 ·

	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17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
	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유성엽 의원 발의) ···································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18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
	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19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9
4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9
4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20
46.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20
47.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20
4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20
49.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20
О	의사일정 변경의 건
5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김성태·김재원·민홍철·박덕흠·박완수·이우현·이헌승·
	이학재·정용기·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 ························21

(16시4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의 궐원에 따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였습 니다.

7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 의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2건의 의원 발 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시대를 상징하셨던 노회찬 의원이 작고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없는 자, 슬 픈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같이 울어 주는 데 있다고 늘 생각하고 실천했던 정의로운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 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다 같이 묵념을 올 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1. 교육위원장 선거
-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의장 제의)
-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의장 제의)
- 5.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 6.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 7.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16시45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

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 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위원장 선거 2건은 국회법 개정 으로 신설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것 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 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 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은 8월 1일로 임 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 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대 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 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 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 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민홍철 존경하는 문 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선수 · 노정희 · 이동원)임명동의에관 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노정희ㆍ이동원ㆍ김선수)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 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 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해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 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후보자는 약 28년간 법관, 변호사로 재판업무 등 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 하여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후 보자의 두 자녀가 2000년부터 2001년경 전남 곡 성으로 위장전입한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문회 직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추가 세 액을 납부하여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 명될 경우 후보자 본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 · 약자의 보호와 사회정 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성 별 · 지역 · 학력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구 성의 다양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법 사항들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가 이를 사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 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 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7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 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매수 시 다운계약서 를 작성한 것은 당시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관으 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있 다는 점과 사형제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후보 자의 견해에 대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 겠다는 후보자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률 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것으 로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 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 명 및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특히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소수자 및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사법제도 전반에관하여 연구하고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 오는 자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를 극복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는 점, 법원·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서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에 적극 관여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이 념적·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 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 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의 특수관계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불성실 소득신고, 증 여세 탈루,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사법개혁비 서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업, 해 당 기금 지원 사기업의 감사 겸직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 시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제 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 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김해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도 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 시면 7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원장 선거 2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나머지 1개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출안, 추천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총 5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기기 우 측에 표시되는 투표 기록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 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56분 투표개시)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주승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 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242표를 얻은 이찬열 의원 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장에 당 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194표를 얻은 안민석 의원 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 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54표, 부 14표, 기권 3 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32표, 부 34표, 기권 5 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28표, 부 39표, 기권 4 표로서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47표, 부 22표, 기권 2 표로서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62표, 부 107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교육 이찬열·문화체육관광 안민석) 인사

(17시43분)

○부의장 주승용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찬열 의원 나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찬열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

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특별히 수원시민 여 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주승용 부의장님, 이주영 부의장님 또 여러 모든 의원님들께 부족 한 제가 20대 국회 하반기에 약 2년 동안 교육위 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 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국가에게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교육을 전담하 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움 을 느낍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 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그동안에 봐 왔던 바에 의하면 교육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대 통령 또한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 하고 협력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삼위일체 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 이 공계 교육, 또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 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 로 선출되신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인사말에 앞서 노 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을 위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 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최운열·송기헌·유동수· 전재수·윤관석·제윤경·추미애·손금주· 설훈·김정우·이해찬·김민기·남인순 의원 발의)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민기 · 김정우 · 남인순 · 박찬대 · 설훈 · 송기헌 · 유동수 · 윤관석 · 이해찬 · 전재수 · 제윤경 · 최운열 · 추미애 의원 발의)

(17시49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8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정재호**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평화를 실은 열차 KTX가 출발하는 경기 고양을 출신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법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 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 이찬열·윤관석·문희상·김정우·김해영· 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17시52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10항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주민 심 사보고에 앞서서 저도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우리 헌정특위에서 심사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 년이 지난 경우 전자매체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전 자매체 보관 방법, 원본 폐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 임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 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개정및정치 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54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영호 고 노회찬 의원님 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중 1급 이상의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 총감·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을 신분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 았습니다만 그 밖에 시보소방공무원의 임용절차 강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 조항은 다른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도입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반대 3인, 기권 4인 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석기· 경대수 · 문진국 · 송기석 · 박성중 · 추혜선 · 박인숙·이종구·박재호 의원 발의)
-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종회· 정춘숙 · 기동민 · 안호영 · 김철민 · 윤후덕 · 임종성·최인호·민홍철 의원 발의)
-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 이춘석 · 박찬대 · 금태섭 · 고용진 · 위성곤 · 박지원 의원 발의)
-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삼화·신창현·윤관석· 김정우 · 김중로 · 정동영 · 손금주 · 김영호 · 금태섭 의원 발의)
-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황희·박재호·안호영·고용진·민홍철· 어기구 · 권칠승 · 조정식 · 기동민 · 정재호 · 이원욱·최인호 의원 발의)
-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7시57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술 진 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토지 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훈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강훈식 고 노회찬 의원님 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시을 출신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재검토 후종합계획을 변경하면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 보존 문서를 사본뿐 아니라 원본이나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

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를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의 각종 특례를 인정하 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2건, 민홍철 의원, 윤관석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붕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피난시설 설치 등에 기술 지원을 하며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관리인의 안전 관리 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8인 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공 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기권 8인으로서 스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건 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명수· 김태흠 · 김선동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권 · 추경호·박성중·원유철 의원 발의)
-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 김석기 · 홍문표 · 박성중 · 박덕흠 · 경대수 · 박맹우·정인화·이종명 의원 발의)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박재호·이찬열· 정성호 · 전현희 · 조배숙 · 윤관석 · 서형수 · 김두관·홍의락 의원 발의)
-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박명재 · 강석호 · 김현아 · 김명연 · 성일종 · 김석기·이채익·박덕흠·이종배 의원 발의)
-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 전현희 · 민홍철 · 이원욱 · 조승래 · 강훈식 · 안호영·손혜원·진선미·제윤경 의원 발의)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민홍철·황희·주승용·황주홍·이개호· 노웅래 · 윤영일 · 최인호 · 박준영 · 이훈 · 강훈식·이종걸·윤후덕 의원 발의)
-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06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1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은권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 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면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제명을 최 신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보고서 공시 및 수시공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같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현행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는바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세대구분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 설치기준 등을 마련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과 2건의 안호영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임대주택과 관련된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이상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호영 의원안과 3건의 박덕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 지정 시 과거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죽목의 재식을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삭제하며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와 회의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부 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15 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주 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4인, 기권 11 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하 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장석춘· 김종대·김석기·황주홍·성일종·신상진· 주광덕·김현아·임이자 의원 발의)
-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정종섭·김성원·정유섭·조훈현· 성일종·문진국·송석준·정태옥·김종석· 이완영 의원 발의)
- 3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조정식·김영진·유동수·전현희· 원혜영·윤관석·남인순·김정우·박완수· 심기준·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임이자·이진복·박성중· 장석춘·김현아·강길부·권성동·안규백· 문진국 의원 발의)

(18시17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2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29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30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3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안호영 고 노회찬 의원님 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출신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박주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도록 하고음주로 판단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되 차량 1대의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전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 및 자동차 소유·사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서류제출을 명할 때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인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 외에도 등록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 기계식주차장이 과 다하게 설치된 경우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조례로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종류 및 설치대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주체를 교 통행정기관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택 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3인 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교 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4 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 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갑윤·김정재·박맹우· 김경진 · 김종석 · 강석호 · 박성중 · 김용태 · 성일종 의원 발의)
-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호영· 이원욱 · 안규백 · 임종성 · 기동민 · 서영교 · 윤관석·윤후덕·설훈 의원 발의)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덕흠·임이자·정태옥· 박맹우 · 김성원 · 이진복 · 김도읍 · 강석호 · 서청원·정갑윤·이학재·유재중 의원 발의)
- 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정양석·이종배·김재경· 김종석 · 문진국 · 김선동 · 이종명 · 정유섭 · 강석진·박찬우·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18시24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3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 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3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36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李憲昇** 제안설명에 앞서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 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민홍철 의원, 박맹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는 경우사업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등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 한 물류공동화 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클 라우드컴퓨팅 외에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전환교통대책,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등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조치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인 승강장, 이른바 고상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은 예외로 하도록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구분소유권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으로서 물 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1인, 기권 5인으로서 지

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 철 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공 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우원식 · 변재일 · 박정 · 이개호・심재권・박재호・정유섭・유동수・ 유승희 의원 발의)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 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18시31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 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홍의락 존 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 홍의락 위원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 함시켜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이채익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의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 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 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 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특례 대 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하 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0 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 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 유성엽 의원 발의)

(18시36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4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 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성수 존경 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입 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대리자 지정 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대응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원 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38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41항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기동민 고 노회찬 의원님 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성북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황주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진료기록 등에대한 열람 사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의 지급 심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며 그밖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요건 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의 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 정성호 · 김철민 · 전해철 · 김정우 · 인재근 · 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18시40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42항 사립학교교직 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해영 먼저 고 노회찬 의원 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해영 위원입니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 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 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 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시42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43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한정애 고 노회찬 의원님 의 평안한 안식을 기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2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 이정미 · 우원식 ·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학조 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을 30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〇**부의장 주승용**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인, 기권 9 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 46.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 **47.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 **4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 **49.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8시46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45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남북경제 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7항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8항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9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윤재옥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5건의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 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 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경제협 력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분야의 현안과 정책 또 제3차 에 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 해 에너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 법원·

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 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 - 으로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 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섯째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7인, 반대 5인, 기권 15 인으로서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6인, 기권 9인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 기권 14 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6인, 반대 5인, 기권 9인 으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시51분)

○**부의장 주승용**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해외 건 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 5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5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김성태 · 김재원 · 민홍철 · 박덕흠 · 박완수 · 이우현 · 이헌승・이학재・정용기・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50항 해외 건설인 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박덕흠** 마지막으로 나왔 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 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 원회가 심사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동 결의안은 그간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한 해외 산업 일꾼들의 숭고한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건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주승용**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박덕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24인, 기권 31 인으로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	과		
	이찬열	242	이군현	6	홍문종	4
	전희경	3	김한표	2	김해영	2
교 육	서영교	2	신경민	2	곽상도	1
	박용진	1	박찬대	1	오세정	1
	기 권	4				
	안민석	194	조경태	14	유은혜	11
	한선교	8	염동열	6	박인숙	4
문화체육	우상호	4	정세균	4	최경환(평)	4
관 광	김성태	3	김재원	3	김수민	2
	손혜원	2	이동섭	2	이상헌	2
	조훈현	2	기 권	6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길부 강병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훈식 경대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성 동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정 우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와 수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설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현 신창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세 정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오 제 세 워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재 중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호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규회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은 재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희 경 전 혜 숙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진 선 미 짓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최 연 혜

찬성 의원(22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성 동 권 미 혁 권 칠 승 김 경 진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성태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 영 진 김 순 례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우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맹성규 래 박 대 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 중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완 수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려 변 재 일 서 형 수 성일종 서 삼 석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신 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엄용수 어 기 구 염 동 열 안 호 영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민 봉 유 은 혜 유동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석 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 혅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헌 승 이현재 이 후 삼 0] 후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세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민홍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3인)					

이 철 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0인)

김 재 원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민 경 욱 박 대 출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혀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훈 설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민 봉 유 은 혜 유동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한 홍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군 현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호 이 완 영 이용 득 이용주 이 은 권 이 은 재 이장우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철희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현 희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전 희 경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정 진 석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천정배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경환(평) 최연혜 추경호 최 인 호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임이자

기권 의원(6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기선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도 읍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선 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수 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순 례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정 호 정 훈 김종민 김 김 종 석 김종회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현 아 나 경 원 김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선숙 박성 중 박 완 수 박 재 호 박인숙 박 정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재 혀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희 경 신 경 신 동 근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워 유 철 워 혜 옂 위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 상 돈 이명수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상 헌 이 석 쳙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 혅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차 열 이철규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혀 재 이 후 삼 0] 후 인 재 근 장 석 춘 임 이 자 장 병 장 정 숙 완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3인) 김 태 흠 박 대 출 박 명 재 기권 의원(4인) 곽 대 훈 김 종 훈 최경환(평) 이 헌 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고용진 강 훈 식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동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김 병 욱 삼 화 김 상 희 관 김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성 金成泰 김 성 원 김 태 김 영 호 김 성 환 김 순 례 김 옂 진 김용 태 김 재 원 정 우 김 정 재 김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중 로 김 철 민 김 김 태 년 김 태 흠 학 용 김 한 정 김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한 표 김 현 아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민홍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인 숙 박 와 수 박 재 호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백 혜 련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성 일 종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석 준 영 길 송 옥 주 송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신용 현 심기준 심재권 안 민 석 심 재 안 상 수 안 호 영 철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정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원 혜 영 유 민 봉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혅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영 일 윤일 규 윤 종 필 이 개호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 군 현 이 규 회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와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은 권 이용호 이 인 영 이 장 우 이정 이종명 재 정 혅 0] 종 구 이 이 주 영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현 재 이 후 삼 이 헌 승 이 인 재 근 0]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제 원 전 재 수 장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세균 정 우 택 정재호 정 유 섭 조 승 래 정진석 조 응 천 조 경 태 조 정 식 주호영 주 승 용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2인)

김현권 손금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인숙 박 재 호 박 홍 근 박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백 혜 련 백 재 현 서 삼 석 변 재 일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설 후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옥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심기준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규 회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 이종구 현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헌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균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채 이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최 인 호 하 태 경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박성중

기권 의원(3인)

전희경 조경태 주호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9인)

강석호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찬 김성태 김성원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용 태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맹성규 노 웅 래 민홍철 박 경 미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설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민 봉 유 의 동 유동수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윤 준 호 윤 호 중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회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석 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 은 권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재정 이종명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재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훈 이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세 균 전 혜 숙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호 영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한 정 애 표 창 원 하태경 함 진 규 홍 익 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주 홍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권성동

기권 의원(8인)

박성 중 곽 대 훈 손 금 주 안 민 석 윤 한 홍 이종배 이철규 주 승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3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기 선 김 도 읍 김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병 욱 김 삼 화 김 김석기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식 김 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재 경 김 재 원 김 김정우 김 정 재 정 호 김 정 훈 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경 맹 성 규 문 진 국 민 욱 민홍철 박 선 숙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명 재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변 재 일 박홍근 백 재 현 밴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송 옥 주 길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어 기 구 안 호 영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정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민 봉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일 규 윤 종 필 윤 준 호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회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상 헌 이 완 영 이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쳙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 이 헌 승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이 현 재 \circ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희					
기권 의원(4인)					
곽 대 훈	윤 한 홍	이 종 배	전 희 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호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권미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두 관 김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문 진 국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인숙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박지 원 백 혜 련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훈 성일종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옥주 송 언 석 송 영 길 송 희 경 신 경 민 신용 현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엄용수 여 상 규 오 영 훈 우 상 호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원 식 워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석 현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완 영 이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철희 이 현 재 이 후 삼 이 헌 승 인 재 근 임이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 우 택 정세 균 정 인 화 정 유 섭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정배 채 이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8인) 곽 대 훈 김용 태 박 성 중 윤 한 홍

이 양수 전 희 경 조 경 태 함 진 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김 성 원 김성 태 金成泰 김 성 환 영 진 김 영 호 김 순 례 김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정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훈 김 중 로 김 종 회 김 태 흠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명 재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찬 대 정 박지 원 백 혜 련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성 일 종 서 형 수 설 훈 송 석 준 소 병 훈 손 혜 워 송 갑 석 송 언 석 송옥주 송 희 경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 동 수 원 혜 영 위성 곤 유 민 봉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유 상 직 윤 상 쳙 유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채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세 균 전 희 경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하 태 경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1인) 김 현 권 기권 의원(3인)

박 덕 흠 손 금 주 안 민 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성 수 김성식 김 석 기 김 김성원 김성 찬 김 성 金成泰 태 영 김 영 호 김 성 환 김 순 례 김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워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현 아 나 경 원 김 노 웅 래 맹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선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반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려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훈 성일종 설 소 병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훈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어 기 구 여 상 규 염 동 열 오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위성 곤 영 유민 봉 유 재 중 유 동 수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일 규 유 재 옥 유 종 필 윤 한 홍 윤 후 덕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만 희 이 개호 이 규 희 이 석 현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종구 이 재 정 이 정 혅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기권 의원(3인)

곽대훈 김철민 박성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창 일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백 재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석 준 손 혜 원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제 세 여 상 규 오 영 훈 우 워 식 워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득 이 은 권 이용주 이용호 이 인 영 이종구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철 규 이 학 재 이헌승 이현재 이 후 삼 인 재 근 장 병 완 이 훈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세 균 정 우 택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홍 익 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강석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원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민 경 욱 민홍철 노 웅 래 문 진 국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지 원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훈 설 성일종 소 병 손 혜 원 송 갑 석 훈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심 재 철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위성 곤 유 동 수 원 유 철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규회 이만희 이 상 돈 이 명 수 이 상 헌 이 수 혁 이석현 이양수 이 완 영 이 은 권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인 영 이정현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인 재 근 \circ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우 택 정성호 정세균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조경태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익 표 함 진 규 홍 의 락 홍 문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주 홍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6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훈 식 강 효 상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석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태 년 김 학 용 김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덕 흠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출 박 성 중 박 명 재 박 영 선 박선숙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반 정 백 재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훈 설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민 석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위성 곤 원 유 철 유 재 중 유 동 수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종 필 유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윤 호 중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상 헌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인 영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정 혅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연 혜 최 운 열 최 도 자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5인)

곽 대 훈 김 재 원 백 혜 련 이 종 구 정 세 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칠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광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종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맹성규 노 웅 래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심 재 권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여 상 규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제 세 워 유 철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재 옥 유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규회 이 석 현 이 만 희 이상돈 이 상 헌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은 권 이용호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철희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세 균 정 재 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진 영 채 이 배 천정배 최 연 혜 최도자 최 인 호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박지원 전희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권성동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기선 김 도 읍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석기 김 상 희 김선 동 김 삼 화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 태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인 숙 백 혜 련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형 수 성일종 서 삼 석 설 훈 손 혜 원 소 병 훈 송 갑 석 송 석 준 송 희 경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창 현 신 동 근 신용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우 원 식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호 중 윤 종 필 유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용 호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명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허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장 병 완 이 훈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전 혜 숙 정성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 유 섭 정인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승 래 주 승 용 진 선 미 조 정 식 천 정 배 짉 옂 채 이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2인)

박성중 유 한 홍

기권 의원(15인)

곽 대 훈 문 진 국 박 대 출 박 명 재 박 완 수 송 언 석 유 재 중 윤 상 직 이 주 영 이 만 희 이종구 이종배 임이자 조경태 주 호 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경 진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수 김 성 원 김성 찬 김성환 김성 태 金成泰 김용 태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회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변 재 일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설 송 갑 석 송 석 준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유동수 위성 곤 유 의 동 유 민 봉 유 재 중 유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윤 호 중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규희 이양수 이 상 헌 이 석 혀 이 수 혁 이 와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성 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윤 영 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수 김성원 김 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화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웅 래 민 홍 철 박 경 미 맹성규 문 진 국 박 덕 흠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선 숙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변 재 일 소 병 훈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손 혜 원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영 길 송옥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호 중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상헌 이석혀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종 구 이 장 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학재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장 정 숙 전 해 철 전재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균 정성호 정 우 택 정 인 화 정재호 조경태 정 종 섭 정 진 석

조 승 래 조정식 주 승 용 진 선 미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진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15인) 곽 대 훈 김 현 아 나 경 원 민 경 욱 박 대 출 박성중 윤 상 직 윤 한 홍 이 만 희 이 현 재 전 희 경 정 유 섭 최 연 혜 홍 철 호 홍 일 표 기권 의원(11인) 김 종 석 박 명 재 강 효 상 박 완 수 박 정 송 석 준 송 희 경 유 상 현 주 호 영 이 종 배 최 운 열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3인, 반대 의원 15인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12인)찬성 의원(20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기선 김 광 림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성 태 김성원 김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학 용 김 한 정 김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대 출 박 덕 흠 민홍철 박 경 미 박 명 재 박선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손 혜 원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송 영 길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여 상 규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원 유 철 워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종 필 윤호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헌 이 수 혁 이양수 이석현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채 익 이 춘 석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재 이 후 삼 이 학 영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성호 정세균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3인)

곽 대 훈 이 상 돈 전 해 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권 미 혁 권성동 권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성 태 김 성 환 김 순 례 김용 태 김 재 경 김 영 진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워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박 덕 흠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손 혜 원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신용 현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 영훈 염 동 열 원 혜 영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영 일 윤일 규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규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용 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후 삼 훈 이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정 병 국 정 우 택 전 희 경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채 이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7인) 곽 대 훈 송 영 길 이 만 희 이 현 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추경호

최 운 열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조 경 태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김 도 읍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한 정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인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재 호 박 찬 대 박 정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옥 주 신 경 민 송 영 길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우 원 식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상 현 윤 영 석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양수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종명 이 재 정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후 삼 인 재 근 이현재 0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우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경태 조 승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정배 최도자 추경호 최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홍 문 표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3인)

심 재 철 이 상 돈 이 학 재 (권미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9인, 기권 의원 3인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상 희 김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재 경 김 순 례 김 영 진 용 태 김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민 홍 철 박선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손 혜 원 송 언 석 송옥주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종 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윤 준 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 인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우 택 정 인 화 정성호 정 유 섭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짉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연 혜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의 락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3인)

김무성 김 민 기 홍 철 호

기권 의원(3인)

김 철 민 오 영 훈 정 병 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무성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김성환 金成泰 김 순 례 김 재 경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호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한 정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인숙 박 재 호 박지 원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민봉 유동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후 덕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인영 이장우 이용호 이 재 정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학 영 이헌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병국 전 희 경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채 이 배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권성동 김성식 박성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고 용 진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 찬 성 태 김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용 태

김정우 김종민 김 중 로 김 해 영

김 태 년 나 경 원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인 숙 박 찬 대 서 삼 석

소 병 훈

송 석 준

송 희 경

심 기 준

안 민 석

엄용수

우 원 식

유민 봉

윤 상 직

윤 재 옥

유 호 중

이규희

이상헌

이 완 영

이 인 영

이종배

이철희

이 헌 승

장 병 완

전 재 수

정 병 국

정 재 호

조 응 천

홍 철 호

김 학 용

진

박 재 호 박 홍 근 서 형 수 손 금 주 송 언 석 신 경 민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정 호

김종회

김 한 정

노 웅 래

민홍철

박 영 선

백 재 현

손 혜 원 송 영 길

신용 현

심 재 철

안 호 영

오 영 훈

원 혜 영

유 재 중

윤 영 일

윤 준 호

이 개 호

이명수

이 수 혁

이용호

이재정

이 채 익

이 학 영

인 재 근

장 정 숙

정 우 택

정 진 석

주 승용

천 정 배

최 인 호

함 진 규

홍 익 표

황 주 홍

전 혜 숙

정

훈

박

설

심 재 권 안 상 수 염 동 열 원 유 철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종 필 유 후 덕

이 만 희 이석현 이 용 주 이장우 이 주 영

이 춘 석 이 후 삼 장 석 춘 전 현 희

정성호 정 종 섭 조 정 식

영 채 이 배 최 연 혜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의 락 홍 영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2인)

이 철 규

이 학 재

임이자

장 제 워

전 희 경

정 인 화

조경태

주 호 영

최도자

추경호

홍 문 표

홍일 표

김 민 기

기권 의원(14인)

권 미 혁 김 경 협 박 명 재 박 성 중 위성 곤 이 현 재 정 유 섭 조 승 래 김성식 김 철 민 신 동 근 신 보 라 0 훈 전 해 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효 상 강 창 일 강 훈 식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기 선 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선동 김석기 김성수 김성 태 김성 찬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정 우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아 노 웅 래 민 경 욱 민 홍 철 문 진 국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변 재 일 서 삼 석 련 소 병 훈 성일종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신 경 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신용 현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우 원 식 원 유 철 오 영 훈 유동수 위성 곤 유 민 봉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 주 영 이종배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임 이 자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인 화

정 진 석

강석호 고 용 진 금 태 섭 김 관 영 김 도 읍 김민기 김 상 희 김성원 김성환 김 재 경 김 정 호 김 종 훈 김 학 용 김 현 권 맹성규 박 경 미 박 성 중 박 재 호 백 재 현 서 형 수 손 혜 원 송 옥 주 신 보 라 심 재 권 안 상 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종 필 윤 후 덕 이 만 희 이 수 혁 이용호 이종명 이철규 이 헌 승 인 재 근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최 연 혜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3인)

곽 대 훈 김성식 전 해 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지 원 박 재 호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옥주 신 동 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염 동 열 우 원 식 원 유 철 오 영 훈 원 혜 영 유동수 유 민 봉 위성 곤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상헌 이 수 혁 이 양수 이용주 이 완 영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용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훈 0] 임 이 자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인 화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 경 태 주 승 용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정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한 정 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성일종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7인, 반대 의원 없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권 미 혁 곽 대 훈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석 기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회 김 정 호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민 경 욱 박 경 미 문 진 국 민 홍 철 박 덕 흠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소 병 훈 서 삼 석 성 일 종 손 혜 원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원 혜 영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회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완 영 이 용 주 이용호 이은권 이장우 이재정 이 주 영 이종명 이 채 익 이 종 배 이철규 이 학 영 이철희 이 춘 석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현 재 \circ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해 철 정 병 국 정성호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박 명 재

윤 한 홍

전 희 경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5인)

권 성 동

홍일 표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식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순 례 김 영 진 金成泰 김 성 환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종훈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해 영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 규 박 덕 흠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지 원 박 찬 대 박홍근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석 준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민봉 유동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만희 이명수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완 영 이 용 주 이 장 우 이용호 이재정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종 배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조경태 조 응 천 정 진 석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6인)

박성중 백재현 심재철 윤영석 이상돈 이은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표 이위(195이)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칠 승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경 진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종민 김 종 회 김 정 훈 김종훈 김 중 로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맹성규 노 웅 래 문 진 국 민홍철 박 경 미 민 경 욱 박 덕 흠 박 명 재 박성 중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박지 원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서 삼 석 성일종 손 혜 소 병 훈 손 금 주 워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보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위성 곤 우 원 식 원 유 철 워 혜 영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후 덕 윤 한 홍 윤 호 중 이 만 희 이개호 이 군 현 이 규 회 이 명 수 이 상 돈 이상헌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철희 이 춘 석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장 제 원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우 택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조경태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표 창 원 최 인 호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함 진 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홍 의 락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강 석 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권성동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경 협 김 관 영 기 동 민 김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무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 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정 우 김 정 재 김 김 정 훈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박 덕 흠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홍 근 박 재 호 박지 원 박 찬 대 백재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현 서 형 수 성일종 손 금 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신 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원 혜 영 유 동 수 유민 봉 위성 곤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유 일 규 유 재 옥 유 종 필 윤 한 홍 이 개호 윤 준 호 윤 호 중 이규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군 현 이 상 헌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 재 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현 재 장 병 완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 우 택 정 유 섭 정성호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조 승 래 주 승 용 조 응 천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영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주 홍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반대 의원(2인) 박성 중 최 연 혜 기권 의원(10인) 곽 대 훈 박 명 재 신 경 민 심 재 철 엄용수 이 만 희 정 종 섭 유 재 중 조 경 태 함 진 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회 김 학 용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문 진 국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인숙 박 재 호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서 삼 석 성일종 손 혜 원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오 영 훈 유민봉 유 의 동 윤 관 석 유 재 중 유 상 직 유 상 현 유 영 석 유 영 일 윤 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학 영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인 재 근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혜 숙 정병국 전희경 정 우 택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채 이 배 진 영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추경호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권 성 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석기 김선동 김 상 희 김성수 김성 태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정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옥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오 영 훈 위성 곤 유 재 중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일 규 윤 종 필 윤 준 호 유 하 홍 유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규 희 이 상 돈 이상헌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 종 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진석 조 승 래 정 종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짓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0인)

강 효 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민 기 김성 찬 박 명 재 박성중 이종배 조 경 태 주 호 영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기선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무 성 김 도 읍 철 김 민 기 김 동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영 진 김용 태 김성환 김 순 례 김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학 용 김 한 정 김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선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재 호 박 홍 근 백 혜 련 박 찬 대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 일 종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소 병 훈 송 옥 주 신 경 민 송 언 석 송 희 경 신 창 현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원 혜 영 유 동 수 위 성 곤 유 민 봉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이 개호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군 현 이규회 이만희 이명수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현 재 0] 후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임 이 자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채 이 배 천 정 배 영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영 철 홍 의 락 홍일 표 황 주 홍

기권 의원(2인)

이 학 영 최 도 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동 철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김성환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한 표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박 경 미 민 경 욱 민홍철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 중 박 재 호 박 영 선 박 완 수 박인숙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재 현 박 찬 대 서 형 수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워 혜 영 유민봉 위성 곤 유동수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이 개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양 수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인 재 근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혜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정 병 국 정 우 택 전 희 경 정성호 정유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진 석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 연 혜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일표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곽대훈 이주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권 칠 승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선 김 광 수 김 도 읍 김 동 철 김무성 김 명 연 민기 김 병 관 김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현 아 나 경 원 김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선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럱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원 혜 영 염 동 열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이 개호 이 군 현 윤 호 중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용주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채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인 재 근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장 석 춘 장 병 완 임 이 자 장 정 숙 전 재 수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병 국 정 우 택 전 희 경 정성호

정 인 화 정 유 섭 정재호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곽 대 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병 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식 김 성 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경미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아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위성 곤 유 의 동 윤 관 석 유동수 윤 재 옥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종 필 윤호중 이 개호 윤 준 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석현 이수혁 이용주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 종 배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헌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장 병 완 0] 훈 임 이 자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재 수 전 혜 숙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진 석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의 락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주 홍 황 영 철 홍일 표

반대 의원(2인)

송 언 석 유일 규

기권 의원(9인)

곽 대 훈 박성중 박 완 수 심 재 철 윤 상 직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조경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 석 기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호 김 정 재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덕 흠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원혜영 위성 곤 유동수 유민 봉 윤 관 석 윤 상 직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일 윤일 규 윤 영 석 유 재 옥 윤 종 필 유 준 호 유 호 중 이개호 이 군 현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석 현 이수혁 이양수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성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인화 정 재 호 정진석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문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이주영 주호영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동 철 김무성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문 진 국 노 웅 래 맹성규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인숙 박 완 수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동 근 송 희 경 신 경 민 신용 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규 희 이상헌 이 명 수 이 상 돈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 장 우 이재정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헌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정병국 전 희 경 정 우 택 정 유 섭 정성호 정인화 정 재 호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정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1인)

김 도 읍

기권 의원(2인)

이 철 규 홍일 표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경 대 수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기선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김 재 원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성중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소 병 훈 성일종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송 희 경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안 규 백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상 수 원 혜 영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위성 곤 유 의 동 유동수 유 민 봉 유 상 현 윤 영 석 유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규 회 이상돈 이 수 혁 이 상 헌 이석현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채 익 이 학 영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헌 승 이 혀 재 이 후 삼 이 후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정 병 국 전 재 수 전 해 철 정 우 택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조 응 천 정 진 석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채 이 배 천정배 최도자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주 홍 홍 의 락 황 영 철 반대 의원(5인) 김무성 권성동 김 도 읍 전 희 경

기권 의원(16인)

주 호 영

곽 대 훈 김 명 연 金成泰 박 명 재 박 완 수 심 재 철 엄용수 윤 상 직 윤 한 홍 이 주 영 장 석 춘 조 경 태 진 영 추경호 최 연 혜 홍 일 표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6인, 기권 의원 16인임)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길 부 강 창 일 강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 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종회 김 종 훈 중 로 김 철 민 김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민 경 욱 민홍철 맹성규 문 진 국 박 덕 흠 박 성 중 박 경 미 박 선 숙 박 지 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소 병 훈 성일종 송 갑 석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민 석 심 재 권 안 규 백 아 호 영 안 상 수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윤 상 직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유 호 중 이 개호 이규희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석 혀 이 양수 이 와 영 이용주 이 장 우 이재정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임이자 인 재 근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함 진 규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주 홍 황 영 철

반대 의원(6인)

권성동 어 기 구 \circ 훈 장 병 완 홍 의 락 정성호

기권 의원(9인)

박 대 출 김 상 희 김성 태 김 태 흠 박 명 재 이 은 권 변 재 일 윤 한 홍

진 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병 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 환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순 례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종민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선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지 원 백 혜 련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성 일 종 손 혜 원 송 석 준 소 병 훈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원 혜 영 위 성 곤 유 의 동 유동수 유민 봉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유 재 옥 윤종필 윤 준 호 윤 호 중 이개호 이규회 이명수 이 만 희 이상돈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철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철 희 이 헌 승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이 자 0 후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정 병 국 전 희 경 정성호 정 우 택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조 정 식 조경태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주 홍

김무성

반대 의원(4인)

권 성 동

기권 의원(14인) 곽 대 훈 김기선 김 도 읍 김 선 동 나 경 원 박 대 출 박 명 재 박 완 수 윤 한 홍 이 완 영 이현재 조 응 천 진 홍일 표 영

이 주 영

이 채 익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 효 상 강석호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미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무성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성 환 김 순 례 김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철 민 김 학 용 김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김 현 아 맹 성 규 문 진 국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성 중 박선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인 숙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위성 곤 어 기 구 유동수 유 의 동 윤 상 직 유 민 봉 윤 상 현 유 영 석 유 영 일 유 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규 희 이 상 헌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 재 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후 삼 훈 이 헌 승 0] 장 병 완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김 병 관

김 상 희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해 철 정성호 정 우 택 전 희 경 정병국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진 석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옂 채 이 배 천 정 배 최 연 혜 최 운 열 최도자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5인)

권 성 동 김 민 기 이철희 변 재 일 주호영

기권 의원(9인)

강 창 일 김 상 희 김 태 흠 노 웅 래 박 대 출 박 명 재 염 동 열 유 한 홍 홍 일 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07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경 대 수 곽 대 훈 권 성 동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 명 연 김 동 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종 회 김 중 로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선숙 박성중 박 인 숙 박지 원 서 삼 석 성 일 종 송 석 준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심 재 권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유동수 유 민 봉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상 현 유 재 옥 유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이개호 이 만 희 이 명 수 이 규 희 이양수 이장우 이종명 이 완 영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 헌 승 이 현 재 장 병 완 장 석 춘 임 이 자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인 화 정 유 섭 정재호 정 진 석 조 경 태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추경호 홍 문 표 홍 영 표 함 진 규 황 영 철 황 주 홍 홍일 표 반대 의원(24인)

권 칠 승

김성환 김 정 호 김 종 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언 석 신 창 현 심기준 안 규 백 위성 곤 유 의 동 윤일 규 이용주 이재정 이 학 영 이 후 삼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기권 의원(31인)

강 훈 식

권미혁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도 읍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현 권 민 홍 철 박 경 미 박 완 수 박 찬 대 박 홍 근 서 형 수 송옥주 신 경 민 심 재 철 이 상 돈 이 은 권 이 상 헌 이 수 혁 인 재 근 장 정 숙 정성호 진 영 최 운 열 표 창 원 홍 익 표 홍 의 락

○출석 의원(28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선 김 광 수 김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성환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원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정호 김 종 대 김 종 민 김종회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선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용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백 승 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엄용수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원 혜 영 유민 봉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 개호 윤 호 중 이 군 현 이명수 이 규 희 이 만 희 이상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 은 권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은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 현 이 종 걸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춘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훈 인 재 근 \circ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성호 정 우 택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운천 정 유 섭 정인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춘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선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18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훈 식 경 대 수 강 효 상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은 희 칠 승 금 태 섭 궈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민 기 병 관 김 병 기 김 도 읍 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성 원 김성 태 김 김성환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용 태 김 재 경 김 김정우 김 정 재 정 호 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맹성규 도 종 환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문 진 국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민 홍 철 박선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백 재 현 서 형 수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신 동 근 민 신 보 라 신 용 현 심 기 준 신 창 현 심 재 철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이규희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상 헌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은 권 이 장 우 이 재 정 이종구 이종명 이 진 복 이 찬 열 이철희 이철규 이 현 재 이혜훈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현 희 전 희 경 전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응 천 조 승 래 진 선 미 영 채 이 배 진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영 표 한 선 교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회

○산회 시 재석 의원(164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성 환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민 김철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태 흠 김 현 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서 삼 석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신 용 현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위성 곤 유 의 동 유 민 봉 유동수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유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이개호 이 규 희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수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현재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정병국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유 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조 경 태 조 승 래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짓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청가 의원(10인)

곽 상 도 박 병 석 유성엽 김 규 환 이 언 주 정 동 영 이 동 섭 정갑윤 조 훈 현 최 교 일

○국회 참석자

입 법 장 구 차 진 정 사 무 0] 인 차 장 용 의 사 국 권 옂 진 장

○출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보건복지부장관 후 박 능 은 환 경 부 장 관 김 경 국토교통부장관 김 혅 미

○출석 정부위원

교육부차관 박 란 춘 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규 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용 김 범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 સીસી	경상남도	평화와 정의의	사망	2018.
노회찬	창원시성산구	의원 모임	사망	7. 23.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선수・노정희・			2010
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진 영	자유한국당	2018.
인사청문특별			7. 18.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손금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0010
	서영교		
	신경민		2018. 7. 18.
교 육	조승래		1. 10.
	곽상도		
	김한표		
	김현아	기 O 체그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전희경		
	홍문종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오세정 이찬열	바른미래당	
교 육	정동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병훈 손혜원 안민석 우상호 유은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2018.
문화체육 관 광	김성태 김재원 박인숙 염동열 조경태 조훈현 한선교	자유한국당	7. 18.
	김수민 이동섭	바른미래당	
	최경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0 =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선수•	금태섭 기동민 민홍철 이재정 이철희 진 영	더불어민주당	
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곽상도 김도읍 김승희 이은재 주광덕	자유한국당	2018. 7. 17.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예산결산 특 별	조배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8. 7. 25.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운영	유의동	바른미래당	
	O 시 귀	평화와 정의의	
	윤소하	의원 모임	201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7. 16.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느기이	평화와 정의의	
	박지원	의원 모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자유한국당	
행정안전	권은희	바른미래당	
	기시키	평화와 정의의	
	정인화	의원 모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0010
정 보	김관영	바른미래당	2018.
	기내스	평화와 정의의	7. 17.
	장병완	의원 모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법관(김선수 •	김도읍	자유한국당	
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인사청문특별	박지원	평화와 정의의	
	박시현	의원 모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 방	하태경	바른미래당	
	김종대	평화와 정의의	
	실증대	의원 모임	201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7. 18.
	김명연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최도자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판소아	의원 모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지어토자카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7. 19.
	기중구 	의원 모임	
7-7-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2018.
국토교통	박덕흠	자유한국당	7. 23.
	. , ,	1.1210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2010
국토교통	윤영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18. 7. 23.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 무	김종석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정양석	자유한국당	
	정병국	바른미래당	
1 -1 - 1 1 5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경대수	자유한국당	2018.
ા જેવે હ	정운천	바른미래당	7. 2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	송희경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법관(김선수 · 노정희 · 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오신환	바른미래당	
3 -3 3 3 -3 3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정용기	자유한국당	
8 8 8 전	신용현	바른미래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8.
	김동철	바른미래당	7. 25.
대법관(김선수・ 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채이배	바른미래당	

○상임위원 개선

00011	2 / 11 🗠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정 무	곽상도	•	자유한국당	
정 무	•	유의동	바른미래당	
기하케과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유의동	•	바른미래당	
	박경미	•		2018. 7. 18.
	박용진	•		
	박찬대	•		7. 10.
교육문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체육관광	소병훈	•	디둘이친구정	
	손혜원	•		
	신경민	•		
	안민석	•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우상호	•		
	유은혜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		
	조승래	•		
	김재원	•		
	김한표	•		
	김현아	•		
	박인숙	•		
그ㅇ므칭	염동열	•		
교육문화 체육관광	이군현	•	자유한국당	
1 1 2 0	전희경	•		
	조경태	•		
	한선교	•		
	홍문종	•		2018. 7. 18.
	홍문표	•		
	오세정	•		
	이동섭	•	바른미래당	
	이찬열	•		
	정동영	•	평화와 정의의	
	최경환	•	의원 모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	김재경	•	자유한국당	
방송통신	조훈현	박성중	7111 2 1 0	
	김종회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외교통일	김성태	김재경	자유한국당	
행정안전	김병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 টেশ	박성중	홍문표	자유한국당	
농람축산품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	김종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신업통상지원 중소벤처기업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김수민	•	바른미래당	
여성가족	•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트병의의	1 -11 4.1		·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표창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박명재	송언석	자유한국당	2018.
특 별	•	김종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7. 18.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곽상도	최교일		
대법관	김승희	정유섭	키 O 됬 그다.	2010
(김선수ㆍ	주광덕	이완영	자유한국당	2018.
노정희·	이은재	장제원		7. 24.
이동원)	채이배	오신환	바른미래당	
임명동의에	최교일	송희경		
관한	정유섭	이철규	자유한국당	2018.
인시청문특별	이완영	이은재		7. 25.
	오신환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직 상실

위원명	사 유	연월일
	국회법 제48조제3항	
장병완	(소속 교섭단체의	2018. 7. 23.
	교섭단체 지위 상실)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사망	2018. 7. 23.
	의원 모임		

○교섭단체 지위 상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법정 의원수 미달로 지위 상실) (2018. 7. 23.)

○의안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이언주·하태경·이찬열·김중로·최운열·이동섭·최도자·권은희·주승용·정병국 의원 발의)

7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전재수·추미애·김철민·정재호· 신경민·유성엽·박재호·김해영·최인호· 이종걸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추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추석 의원 발의) 7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엄용수·유기준·박덕흠·경대수· 원유철·추경호·조경태·김광림·이학재· 송석준·최교일·이종명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추경호·이종배·이채익·곽대훈· 김상훈·김광림·송희경·박명재·김선동· 정갑윤·강석호·조경태·김기선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2018. 7. 16. 이찬열·황주홍·이동섭·위성곤· 윤후덕·김경진·권칠승·유성엽·김수민· 민병두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엄용수·유기준·박덕흠·경대수· 원유철·조경태·김광림·이학재·송석준· 이종명·최교일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엄용수·유기준·박덕흠·경대수· 원유철·추경호·조경태·김광림·이학재· 송석준·최교일·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정·윤후덕·권칠승·박재호· 송기헌·이찬열·어기구·신경민·소병훈· 김병욱·김병관 의원 발의)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어기구·전해철·정재호·노웅래· 손혜원·박정·김철민·최재성·심재권· 황희 · 유승희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6.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7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6. 박순자・이명수・백승주・윤종필・ 조경태 · 이현재 · 이종배 · 윤한홍 · 신상진 · 최교일 · 김순례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철희·기동민·권미혁·정재호· 김정우 · 김경진 · 추미애 · 김병기 · 채이배 · 이종걸 · 안호영 의원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유민봉ㆍ이채익ㆍ이진복ㆍ황영철ㆍ 이명수 · 송희경 · 이종배 · 김석기 · 최연혜 · 정유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최도자·이동섭·김경진·이찬열· 김중로 · 신용현 · 장정숙 · 손금주 · 이언주 · 이태규·김광수·김삼화 의원 발의)

7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김관영·정운천·최도자·이찬열· 신용현 · 김수민 · 박주선 · 김중로 · 주승용 · 유의동·김삼화·오세정·이태규 의원 발의) 7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박명재·박덕흠·김성원·김석기· 김광림 • 박성중 • 임이자 • 이양수 • 원유철 • 주호영·이완영·심재철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송기헌·김철민·민홍철·송갑석· 유은혜 · 김병기 · 신창현 · 유동수 · 안호영 · 심기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박광온·김해영·김현권·백혜련· 김영진 · 이춘석 · 안민석 · 전현희 · 권칠승 · 이학영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면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안민석·김병기·노웅래·손혜원· 유은혜·송갑석·김철민·강창일·서삼석· 고용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태규·오세정·신용현·권은희· 최도자 · 채이배 · 이찬열 · 김동철 · 정운천 · 오신환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태규·손금주·박주선·정성호·최도자·이언주·김관영·주승용·채이배·오신화 의원 발의)

7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철희·기동민·권미혁·정재호· 김정우·김경진·추미애·김병기·채이배· 이종걸·안호영 의원 발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이철희·기동민·권미혁·정재호· 김정우·김경진·추미애·김병기·채이배· 이종걸·안호영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유민봉·이찬열·이은권·김철민· 金成泰·김현권·경대수·김중로·이명수· 김재원·송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이태규·신용현·이동섭·송희경·최도자·이언주·김관영·주승용·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박정·윤후덕·권칠승·박재호· 송기헌·이찬열·어기구·신경민·소병훈· 김병욱·김병관 의원 발의)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최도자·이동섭·이찬열·김중로· 신용현·장정숙·손금주·이언주·조배숙· 김광수·김승희·김삼화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박인숙·정진석·경대수·김성원· 이찬열·김현아·이명수·김세연·신상진· 김명연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이동섭·신용현·이학재·박주선· 주승용·박명재·이언주·김삼화·이찬열· 김수민·권은희·유의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안민석·김병기·노웅래·손혜원· 유은혜·송갑석·김철민·강창일·서삼석· 고용진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안민석·노웅래·손혜원·유은혜· 송갑석·김병기·김철민·강창일·서삼석· 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 발의)

7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7. 17. 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 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 김종민·김두관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권칠승·박정·고용진·이춘석· 박재호·이찬열·어기구·이수혁·박광온· 박선숙·김해영 의원 발의)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김경진·김성수·황주홍·이동섭· 오세정·김수민·정인화·김광수·송희경· 유영일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김경진·김성수·황주홍·이동섭· 오세정·김수민·김삼화·김광수·송희경· 윤영일 의원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이언주·주승용·김중로·이동섭·

최도자 · 김수민 · 정병국 · 권은희 · 이학재 · 유의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김기선·김성원·이명수·원유철· 홍문표 · 곽대훈 · 추경호 · 김도읍 · 박덕흠 · 경대수 의원 발의)

7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8. 김정재·최연혜·김기선·주광덕· 박덕흠 · 심재철 · 김명연 · 정갑윤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7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8. 김정재·최연혜·김기선·주광덕· 박덕흠 · 심재철 · 김명연 · 정갑윤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7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8. 곽대훈·김명연·최연혜·이채익· 김도읍・김규환・추경호・김상훈・김정재・ 김기선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김규환・정우택・정갑윤・이종명・ 이주영 · 윤종필 · 이채익 · 성일종 · 곽상도 · 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천정배·박주현·김광수·장정숙· 김경진・장병완・전혜숙・유성엽・황주홍・ 유영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박인숙·김승희·김성원·정진석· 김현아・이명수・김세연・송희경・신상진・ 김명연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윤종필·김규환·임이자·김성찬·

이명수 · 성일종 · 정태옥 · 박덕흠 · 정우택 ·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한정애·권미혁·조정식·신경민· 신창현 · 진선미 · 고용진 · 김병기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8. 한정애·김병기·신경민·진선미· 김성수 · 윤후덕 · 심재권 · 고용진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8. 7. 18. 이학재·오세정·황주홍·김삼화· 유동수・신용현・이종구・이태규・엄용수・ 김중로 의원 발의)

7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김진태·이채익·이현재·윤영석· 이종명・이장우・유기준・강석진・윤상직・ 민경욱 · 원유철 · 엄용수 · 심재철 · 이철규 · 최교일 · 윤상현 의원 발의)

7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최경환(평)·김경진·김수민·김종회· 박선숙 · 박주현 · 박지원 · 백재현 · 안호영 · 윤영일·이춘석·조배숙·천정배 의원 발의) 7월 2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김선동·김규환·정갑윤·민경욱· 이종명 · 신보라 · 경대수 · 추경호 · 나경원 · 이만희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최경환(평)·김경진·김수민·김종회· 박선숙 · 박주현 · 박지원 · 백재현 · 안호영 · 윤영일·이춘석·조배숙·천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춘숙·윤후덕·박정·채이배·

김상희·권미혁·기동민·진선미·유은혜· 안호영·소병훈·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정춘숙·윤소하·김상희·전혜숙· 기동민·박재호·이찬열·송갑석·유은혜· 김병기·박광온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윤종필·임이자·김성찬·이명수· 성일종·정태옥·이양수·원유철·신보라· 박덕흠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춘숙·유승희·권미혁·백혜련· 인재근·전혜숙·김상희·이원욱·기동민· 김병기·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이찬열·황주홍·이동섭·김수민· 유성엽·위성곤·윤후덕·채이배·권칠승· 조배숙 의원 발의)

7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정동영·유성엽·이찬열·김종회· 장정숙·김중로·박주현·황주홍·김광수· 주승용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동영·장정숙·노웅래·이찬열· 김중로·김경진·김종회·황주홍·김광수· 주승용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동영·장정숙·노웅래·이찬열· 김중로·김경진·김종회·황주홍·김광수· 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김선동·김규환·정갑윤·민경욱· 이종명·신보라·경대수·추경호·나경원· 이만희 의원 발의)

7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

(2018. 7. 20. 하태경·김상희·김현아·박완수· 신용현·오세정·오신환·이동섭·이양수· 정병국·정종섭·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 7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송석준·이은재·민경욱·이철규· 경대수·박덕흠·박성중·심재철·이명수· 박순자·김순례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원유철・김기선・金成泰・김현아・ 박덕흠・박맹우・박명재・서청원・윤종필・ 이채익・임이자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김진태·이현재·이채익·윤영석·이종명·이장우·유기준·강석진·윤상직·민경욱·원유철·엄용수·심재철·이철규·최교일·윤상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선동·김규환·정갑윤·민경욱· 이종명·신보라·경대수·추경호·나경원· 이만희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이종명·김진태·김선동·김성찬· 정갑윤·김종석·박성중·엄용수·김순례· 신보라·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우원식·송기헌·김해영·박재호· 이원욱·이학영·김현권·기동민·유은혜· 김성화·김종훈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우원식·송기헌·김해영·박재호· 이원욱·이학영·김현권·기동민·유은혜· 김성환·김종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정재·최연혜·김기선·곽대훈· 박덕흠 · 심재철 · 정갑윤 · 추경호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정재·최연혜·김기선·곽대훈· 박덕흠 · 심재철 · 정갑윤 · 추경호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정재·최연혜·김기선·곽대훈· 박덕흠 · 심재철 · 정갑윤 · 추경호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7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정재·최연혜·김기선·곽대훈· 박덕흠 · 심재철 · 정갑윤 · 추경호 · 이양수 · 강석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권칠승·신경민·김해영·제윤경· 이찬열 · 박정 · 이상헌 · 최인호 · 한정애 · 이수혁 · 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위성곤·이찬열·황주홍·김현권· 권칠승 · 신창현 · 이양수 · 설훈 · 김철민 · 이개호 의원 발의)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우원식·송기헌·김해영·박재호· 이원욱 · 이학영 · 김현권 · 기동민 · 유은혜 · 김성환 · 김종훈 의원 발의)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승희·박덕흠·임이자·윤한홍· 이명수・유재중・박성중・이은권・김상훈・ 이완영 의원 발의)

7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김선동·김규환·정갑윤·민경욱· 이종명 · 경대수 · 추경호 · 나경원 · 이만희 · 정운천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0. 제윤경·소병훈·윤후덕·김경협· 이춘석・유동수・손혜원・심기준・민홍철・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 요청안

(2018. 7. 23. 대통령 제출)

7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3. 변재일·전혜숙·이학영·박홍근· 소병훈 · 김영호 · 안규백 · 김병욱 · 윤관석 · 김해영ㆍ이수혁 의원 발의)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3. 김현아·주호영·황영철·박덕흠· 문진국 · 박인숙 · 김석기 · 경대수 · 임이자 · 송기헌 의원 발의)

7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3. 김경진·김세연·장병완·김태흠· 황주홍 · 장정숙 · 김종회 · 김광수 · 윤영일 · 어기구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7. 23. 송기헌·김철민·유승희·신경민· 민홍철 · 유은혜 · 윤소하 · 김병기 · 신창현 · 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7. 23. 남인순·신창현·신경민·진선미· 윤관석 · 김병기 · 오영훈 · 김상희 · 유은혜 · 소병훈·김철민 의원 발의)

7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어기구·김해영·노웅래·김민기·김병기·신창현·김경진·이개호·박정·김철민 의원 발의)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병기· 김철민·박정·소병훈·송옥주·원혜영· 이수혁·조정식 의원 발의)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박선숙·인재근·김경진·권칠승· 김종회·채이배·김삼화·이용호·김현권· 최경환(평) 의원 발의)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전해철·권미혁·전혜숙·전재수· 이학영·최인호·정재호·황희·박광온· 안규백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박재호·송기헌·최인호·박정· 권칠승·전재수·김해영·유은혜·윤준호· 강병원·위성곤·김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이태규·박주선·정성호·채이배· 박성중·이언주·신용현·오신환·김수민· 최도자 의원 발의)

7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이태규·박주선·정성호·김광수· 이언주·신용현·오신환·김수민·채이배· 최도자 의원 발의)

7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이찬열·황주홍·유동수·윤후덕· 김삼화·하태경·권칠승·강창일·조경태· 민병두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정갑윤·추경호·강석호·권성동· 박맹우·김석기·송희경·유재중·성일종· 경대수·이진복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유민봉·김규환·장제원·이찬열· 심재철·金成泰·이태규·송희경·이은권· 김순례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4. 이태규·박주선·김삼화·정성호·김광수·이용호·이언주·신용현·오신환· 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이찬열·이동섭·윤후덕·박정·황주홍·권칠승·유성엽·위성곤·이용호· 조배숙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5. 이상헌·이채익·정갑윤·박맹우· 강길부·김종훈·권칠승·최운열·손혜원· 김두관·윤영일·설훈·노웅래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주호영·추경호·김명연·김용태· 김현아·정양석·김성원·박완수·성일종· 이종구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5. 주호영·추경호·김명연·김용태· 김현아·정양석·김성원·박완수·성일종· 이종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김석기·송희경·정태옥·정갑윤· 강석진·곽대훈·김성찬·이양수·나경원· 박명재 의원 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황주홍·이찬열·김종회·유성엽· 위성곤·권칠승·조배숙·이학재·김광수· 천정배 · 장정숙 · 민홍철 · 김수민 · 오영훈 · 손금주·정동영·김중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5. 이은권・金成泰・홍문표・김성원・ 박덕흠 · 김성찬 · 정유섭 · 유민봉 · 함진규 · 윤상현·민경욱·김정재·박순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5. 이은권・金成泰・홍문표・김성원・ 박덕흠 · 김성찬 · 정유섭 · 유민봉 · 함진규 · 윤상현·민경욱·김정재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주광덕·정운천·박명재·김선동· 추경호 · 최연혜 · 성일종 · 김정재 · 이종배 · 김성찬 의원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8. 7. 25. 함진규·송희경·임이자·강효상· 김승희 · 최교일 · 이만희 · 김병기 · 이은권 · 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1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이상 2건 2018. 7. 25. 의장 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 2018. 7. 26.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18.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7.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2018. 7. 26.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8. 7. 26.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조승래·김민기·김정우·남인순· 박찬대 · 설훈 · 송기헌 · 유동수 · 윤관석 · 이해찬 · 전재수 · 제윤경 · 최운열 · 추미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8. 조승래·최운열·송기헌·유동수· 전재수 · 윤관석 · 제윤경 · 추미애 · 손금주 · 설훈 · 김정우 · 이해찬 · 김민기 · 남인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1. 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 송기석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회 · 유성엽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 전해철 · 김정우 · 인재근 · 이종걸 · 박남춘 · 전혜숙 · 김영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교육위원장 보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6,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홍의락·우원식·변재일·박정· 이개호・심재권・박재호・정유섭・유동수・ 유승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7. 6. 26. 이채익·최연혜·윤한홍·김규환· 유민봉·김명연·곽대훈·여상규·정운천· 주호영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9. 20. 정갑윤·이종명·김명연·김석기· 성일종·박맹우·조훈현·이철우·권성동· 이진복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7. 11. 7. 정유섭·정갑윤·송희경·김성태· 金成泰·안상수·정운천·송기헌·김규환· 최연혜·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8. 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 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 이양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1. 9. 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 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 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6. 26. 박주민·이원욱·김철민·이용득· 신창현·기동민·서영교·추혜선·박정· 유동수·권미혁·박재호·강창일·박찬대· 천정배·박남춘·채이배·임종성·송옥주· 안규백·윤관석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0. 11. 우원식·이원욱·박재호·한정애· 윤종오·김해영·홍영표·서형수·송옥주· 이용득·이학영·최인호·박홍근·박광온· 이정미·홍익표·김현권·기동민·정춘숙· 진선미·강병원·신창현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4. 이정미·김종대·김현권·노회찬· 민홍철·송옥주·심상정·우원식·윤소하· 추혜선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임이자·문진국·장석춘·김경진· 송희경·함진규·윤영일·곽상도·윤종필· 이명수 의원 발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신창현·강병원·유동수·김철민· 권미혁·전해철·윤후덕·어기구·김한정· 송기헌·이훈·박정·송옥주·김병욱· 유은혜·조승래·김영호·김종민·위성곤· 이개호·김병기·박찬대·김상희·임종성· 원혜영 의원 발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강병원·정성호·고용진·김경협·유동수·서영교·이원욱·박찬대·김상희·기동민·김민기·최운열·박정·어기구·송옥주·제윤경·민홍철·김종민·강훈식·김병욱·소병훈·김철민·윤후덕·백혜련·진선미·백재현·양승조·안민석·김삼화·신창현·김영주·정재호·노웅래·유승희·김병기·이춘석·황희·안호영·김호영·박용진·이용득·문희상·서형수·임종성·한정애·윤관석·안규백·이재정·박남춘·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박찬우·이명수·김태흠·김선동· 박덕흠·김용태·이은권·추경호·박성중· 원유철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3. 9. 김성찬·이명수·김석기·홍문표· 박성중·박덕흠·경대수·박맹우·정인화· 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7. 5. 31. 김현아·주호영·김석기·경대수· 문진국 · 송기석 · 박성중 · 추혜선 · 박인숙 · 이종구 · 박재호 의원 발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3. 12. 강훈식·김종회·정춘숙·기동민· 안호영 · 김철민 · 윤후덕 · 임종성 · 최인호 · 민홍철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백혜련・오영훈・정성호・최인호・ 이춘석 · 박찬대 · 금태섭 · 고용진 · 위성곤 · 박지워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4. 백혜련·김삼화·신창현·윤관석· 김정우 · 김중로 · 정동영 · 손금주 · 김영호 · 금태섭 의원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3. 28. 황희·박재호·안호영·고용진· 민홍철 · 어기구 · 권칠승 · 조정식 · 기동민 · 정재호ㆍ이원욱ㆍ최인호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민홍철·박재호·이찬열·정성호· 전현희 · 조배숙 · 윤관석 · 서형수 · 김두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 김명연 · 성일종 · 김석기 · 이채익 · 박덕흠 · 이종배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이해찬 · 전현희 · 민홍철 · 이원욱 · 조승래 · 강훈식 · 안호영 · 손혜원 · 진선미 · 제윤경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민홍철·황희·주승용·황주홍· 이개호 · 노웅래 · 윤영일 · 최인호 · 박준영 ·

이훈·강훈식·이종걸·윤후덕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문진국·장석춘·김종대·김석기· 황주홍 · 성일종 · 신상진 · 주광덕 · 김현아 · 임이자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6. 정종섭·김성원·정유섭·조훈현· 성일종 · 문진국 · 송석준 · 정태옥 · 김종석 · 이완영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조정식·김영진·유동수·전현희· 원혜영 · 윤관석 · 남인순 · 김정우 · 박완수 · 심기준·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9. 5. 장제원·임이자·이진복·박성중· 장석춘 · 김현아 · 강길부 · 권성동 · 안규백 · 문진국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2. 9. 송희경·정갑윤·김정재·박맹우· 김경진 · 김종석 · 강석호 · 박성중 · 김용태 · 성일종 의원 발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4. 전현희·안호영·이원욱·안규백· 임종성 · 기동민 · 서영교 · 윤관석 · 윤후덕 · 설훈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헌승·박덕흠·임이자·정태옥· 박맹우 · 김성원 · 이진복 · 김도읍 · 강석호 · 서청원·정갑윤·이학재·유재중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김용태·정양석·이종배·김재경· 김종석 · 문진국 · 김선동 · 이종명 · 정유섭 · 강석진·박찬우·정태옥·주호영 의원 발의)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2017. 11. 22. 김성태·김재원·민홍철·박덕흠· 박완수 · 이우현 · 이헌승 · 이학재 · 정용기 · 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18건 수정하여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 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 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 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2017. 5. 31. 김현아·주호영·김석기·경대수· 문진국·송기석·박성중·추혜선·박인숙· 이종구·박재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2018. 1. 26. 이헌승·박맹우·정운천·김한표· 박덕흠·정갑윤·임이자·정태옥·김성원· 함진규·정유섭·윤상현·윤상직·이진복· 유재중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현아·주호영·김석기·문진국· 박인숙·김관영·박순자·경대수·장제원· 이종명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7. 8. 18. 김현아·장제원·주호영·김승희· 문진국·김무성·김관영·하태경·박성중· 정양석·이태규·김영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민홍철·이찬열·정성호·윤관석· 홍의락·김철민·황희·이원욱·안규백· 김현권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윤관석·이학영·최인호·안규백·이재정·박영선·김정우·장정숙·추미애·전현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신상진·김정훈·정성호·성일종· 이종명·정갑윤·송희경·김규환·주호영· 유민봉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13. 오영훈·이원욱·강창일·백혜련· 위성곤·손혜원·안규백·송기헌·유동수· 김상희·박경미·홍문표·조승래·노웅래· 안민석·표창원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6. 안호영·최인호·이용호·김상희· 김경협·강훈식·백재현·원혜영·김현권· 이석현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21. 정동영·장정숙·박정·김광수·오제세·최경환(국)·김수민·김종회·소병훈·김중로·윤소하·이태규·황주홍·유성엽·김관영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신창현·민병두·김영호·이훈· 이수혁·유승희·박정·제윤경·소병훈· 심재권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8. 16. 김동철·이찬열·김광수·김관영· 정성호·정동영·신용현·정인화·주승용· 박주선·장병완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안호영·이석현·제윤경·김두관· 박범계·김현권·임종성·황희·송영길· 전현희·강훈식·김철민·최인호·김상희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 김명연·성일종·김석기·이채익·김세연· 박덕흠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8. 3. 28. 박덕흠·박성중·홍문표·박맹우· 정태옥·원유철·김성찬·이학재·엄용수· 경대수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8. 3. 29. 박덕흠·박성중·홍문표·박맹우· 정태옥·원유철·김성찬·이학재·엄용수· 경대수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8. 3. 30. 박덕흠·박성중·홍문표·박맹우· 정태옥 · 원유철 · 김성찬 · 이학재 · 엄용수 · 경대수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주민·최도자·추미애·박정· 오제세 · 윤관석 · 이철희 · 김영호 · 정인화 · 신창현 · 소병훈 · 심기준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워 대표발의)

(2018. 2. 12. 안호영·임종성·김상희·이석현· 이용호 · 최인호 · 강훈식 · 이원욱 · 송영길 · 김현권 · 어기구 · 제윤경 · 전현희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민홍철·윤관석·강훈식·임종성· 안호영·이찬열·최인호·문희상·김병욱· 조정식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4. 박맹우・원유철・정갑윤・윤영석・ 장석춘 · 김성찬 · 이채익 · 김승희 · 박완수 · 조경태·김학용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워 대표발의)

(2017. 12. 15. 박맹우·원유철·정갑윤·윤영석· 장석춘 · 김성찬 · 이채익 · 김정훈 · 박완수 · 조경태·김학용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증 의워 대표발의)

(2017. 12. 15. 이헌승·함진규·정용기·박완수· 박덕흠 · 김도읍 · 이장우 · 김성원 · 유기준 · 강석진·박대출·윤상현·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2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5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 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 이찬열 · 윤관석 · 문희상 · 김정우 · 김해영 · 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이상 3건 2018. 7. 6. 대통령 제출)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상 3건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심사기간 지정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8.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8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5. 31. 정부 제출)

7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 교통 • 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5. 31. 정부 제출)

7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 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함

○청원 제출

육·해·공·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

(2018. 7. 18. (사)한국축구클럽연맹 회장 전대열 외 686인으로부터 김선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요청서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2018. 7. 17. 독립기념관장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8. 7. 17. 통일부장관 제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8. 7. 26. 대통령 제출)

○보고서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에 대한 감사」감사결과보고서

(2018. 7. 17. 감사원 제출)

7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출판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8. 7. 17. 감사원 제출)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복무 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및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상의 부실 및 예산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 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2018. 7. 20. 감사원 제출)

이상 2건 7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처리보고서

(2018. 7. 25. 정부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록으로 보존함)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7. 23.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회찬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본회의장 의석표 2018. 7. 25. 기준 で平り 국회소속기관 可如田 世谷子 KH ROW 当らか 可罗 了美工 で前で 至今東 巴油 of Books 馬音軍 中心可 中国 不多少 五分里 由之中 তা 万多里 少多个 可声 本ななが かなばり 子をなる の神社 でまって 松田市 ROWLING المكروعية るなり まず明 平天市 全部を 学学年 炒 2 /4 5 40 ES Ro 至。至 小田の村 د المهرك 五合計 多可母 百岁是 of top the 서야종 の方が 哥 क 마 TH